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・운영에 관한 법률안 (임이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418

발의연월일: 2020. 7. 27.

발 의 자:임이자·추경호·권명호

김정재 · 한기호 · 이헌승

이철규 · 양금희 · 박성민

박대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국내 유일의 고등·평생·원격 교육기관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미래의 역량을 키워주고 코로나19로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임.

그러나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1972년부터 운영되면서 국민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그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특수성을 반영하기 미흡한 실정임.

이에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한국방송통신 대학교의 국립평생교육기관으로 확고히 하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려 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「교육기본법」에 따라 국민의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국립학

- 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·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대학본부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함(안 제3조).
- 다.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대학운영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자율권을 가지는 법적지위를 규정함(안 제4조).
- 라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5조).
- 마. 한국방송대학교의 총장, 부총장 및 교원 등의 운영기준을 규정함 (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).
- 바.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업과 단과대학 및 지역대학 등을 규정함 (안 제10조부터 16조까지).
- 사.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회계 등의 사항을 규정함(안 제17조).
- 아. 국가의 재정 책임을 규정함(안 제18조).

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· 운영에 관한 법률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「교육기본법」 제10조제1항,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민의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·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.
- 제2조(다른법률과의 관계)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·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고등교육법」,「교육공무원법」,「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」등관계법률에 따른다.
- 제3조(소재지)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대학본부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조(법적 지위) 국립대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학사, 연구, 재정 등 대학운영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자율권을 갖는다.
- 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격고 등교육과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운영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.
 - 1. 국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2.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6조(학교의 장) 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.
 - ② 총장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③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.
 - ④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부총장) 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교수 중에서 부총장을 둘 수 있다.
 - ② 부총장은 총장이 선임한다.
 - ③ 부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- ④ 부총장은 총장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⑤ 부총장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장의 위임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- 제8조(교원 등)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교원 등의 정원과 운영은 대통령 경으로 정한다.
- 제9조(공무원의 정원)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수업 등)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업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.
- 제11조(단과대학 등) 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학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단과대학을 두고 단과대학에 학과 및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

- 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-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. 이 경우 「고등교육법」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일반대학원, 전문대학원,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다.
- 제12조(지역대학) ①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수업·시험업무 등 학사관 리 지원을 위하여 지역대학을 둘 수 있다.
 - ② 각 지역대학의 장은 총장이 임면한다.
 - ③ 지역대학은 학습관 및 학습센터를 둘 수 있다.
 - ④ 그 밖에 지역대학과 관련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.
- 제13조(디지털미디어센터) 교육콘텐츠 개발, 제작, 송출을 위한 방송대학TV 운영을 위해 디지털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다.
- 제14조(부속시설 등) 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시설·연구시설·부속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(이하 "부속시설등"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 - ② 부속시설등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(하부조직) 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사무국 등을 둘 수 있고,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행정실을 둘 수 있다.
 - ② 그 밖에 하부조직과 관련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.
- 제16조(협력학교)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원활한 교육을 위하여 국내· 외의 협력학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, 협력학

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7조(회계 등) ①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여 야 하며 매년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대학회계 등을 설치하며, 그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- 제18조(국가의 재정 책임) 국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제5호 및 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」에 따라 설치된 종전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본다.
- 제3조(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 통신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은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의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본다.
- 제4조(교직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통신

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교직원으로 본다.

- ② 종전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은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8조제1 호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 교 총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.
- 제5조(권리와 의무 승계)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승계한다.